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S&S's Newsletter – 2020 년 05 월

고객사 및 독자분께,

S&S 회계법인의 2020년 05월 뉴스레터를 소개드립니다.

본 뉴스레터가 귀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 본 자료는 요약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사의 사업 운영 중 구체적인 세무, 회계, 이전가격, 노동법, 투자 및 관세, 법적 이슈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당사에 전문 자문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 Head office:

8th Floor,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Viet Nam

Tel: 84 (28) 39 104 996

Fax: 84 (28) 39 104 998

Web: <http://www.ssaudit.com>

#### Hanoi office:

7th Floor, Vinaconex 9 Building,  
Pham Hung St., Me Tri Ward, Tu Liem Dist,  
Hanoi, Viet Nam

Tel: 84 (24) 62 512 199

Fax: 84 (24) 62 512 201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계법인에서 도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목차●●●●●

### 1. 세무 및 세무행정

- 1.1 개인소득세(PIT)의 개인 / 부양가족 공제 기준 조정에 대한 결의문 번호 954/2020/UBTVQH14 (2020.06.02)
- 1.2 수출 가공 기업(EPE)에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 부가세(VAT)에 관한 공문번호 41472/CT-TTHT (2020.05.26)
- 1.3 베트남 회사에서 출장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적용하는 세무정책에 관한 공문번호 2012/TCT-DNNCN (2020.05.18)

### 2. 관세

- 2.1 수출 가공 기업(EPE)의 공장 매각에 대한 공문번호 2869/TCHQ-GSQL (2020.05.04)
- 2.2 수출품의 상표에 관한 공문번호 1381/HQHCM-GSQL (2020.05.13)

### 3. 기타

- 3.1 임시수입, 재수출, 제품의 국경지역 운송, 보세창고로 제품 운송 사업 관련 수출입품 보세구역 적용에 대한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번호 09/2020/TT-BTC (2020.05.14)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1.1 개인소득세(PIT)의 개인/ 부양가족 공제 기준 조정에 대한 결의문 번호 954/2020/UBTVQH14 (2020.06.02)

2020년 6월 2일 국회는 개인소득세의 개인공제 / 가족 공제 조정에 대한 결의문 번호 954/2020/UBTVQH14를 공식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공제 : 월 900 만동에서 월 1,100 만동으로 증가
- 부양가족 공제 : 월 360 만동/인당 에서 월 440 만동/인당 으로 증가

본 결의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전체기간에 적용됩니다. 단, 2020년 1~6월 해당분은 연말정산시 적용 가능합니다.

## 1.2 수출 가공 기업(EPE)에 제공하는 서비스 매출 부가세(VAT)에 관한 공문번호 41472/CT-TTHT (2020.05.26)

시행규칙 번호 219/2013/TT-BTC 제 9 조 제 1 항 b 점에 따르면, 면세 구역에 있는 개인 또는 조직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가 면세 지역에서 소비된 경우, 이는 면세 구역에서 수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0%를 적용합니다.

동 시행규칙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구역 : 수출 가공 구역, 혹은 수출 가공 기업 허가를 받은 기업 (EPE) 등 (시행규칙 번호 219/2013/TT-BTC 제 4 조 제 20 항)
- 이에 따라, 수출 가공 기업 (EPE)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출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시행령 번호 82/2018/ND-CP 제 2 조 제 10 절에 따르면, 수출 가공 기업이 수출품 제조 전문 일 경우, 수출 가공 구역 (경제 산업 단지)이외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 1.3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적용하는 세무정책에 관한 공문번호 2012/TCT-DNNCN (2020.05.18)

본 공문의 지침에 따라, 해외 기업이 베트남법인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동시에 베트남으로 직원을 보내는 경우, 해당 서비스 계약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되며, 해당 직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시행규칙 103/2014/TT-BTC(2014.08.06)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에 따른 수입에 대해 계산되는 반면, 개인소득세는 시행규칙 111/2013/TT-BTC(2013.08.15) 규정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에 대해 계산됩니다.



#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MPANY

8<sup>th</sup> Floor, 41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028-3910.4996 – 3910.4997

Email: [SAMUEL230@HANMAIL.NET](mailto:SAMUEL230@HANMAIL.NET)

Fax: 028-3910.4998

[SAMUEL230@SSAUDIT.COM](mailto:SAMUEL230@SSAUDIT.COM)

## 2.1 수출 가공 기업(EPE)의 공장 매각에 대한 공문번호 2869/TCHQ-GSQL (2020.05.04)

베트남 세관총국의 의견에 따르면, 수출 가공 기업(EPE)이 다른 수출 가공 기업에게 공장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장과 함께 판매되는 기계 설비 (해당 설비는 수입 혹은 국내 구입) 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39/2018/TT-BTC 제 1 조 제 51 항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입한 설비 (세관통관 절차 면제) 혹은 수입된 설비로서 초기 수입 당시 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EPE 에서 일반기업 (EPE 정책 미적용) 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해당 판매시 세관통관 및 관련 세금 납부 등은 면제됩니다.
- 수입 설비 (해외, 국내 수입, 수출 가공 기업으로부터 구입 포함)로서 초기 수입 당시 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다른 수출 가공 기업에게 설비를 양도하기 전, 시행령 59/2018/ND-CP 제 1 조 제 12 항에 따라 사용 목적 절차 변경을 신고하고, 금 신고 등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2.2 수출품의 상표에 관한 공문번호 1381/HQHCM-GSQL (2020.05.13)

시행령 69/2018/ND-CP 제 39 조 제 9 항에 따르면, 외국인 계약자와 체결한 제품 가공 계약은 상품 표기 및 제품 생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임가공품의 상표는 반드시 가공 계약시 정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수출 기업은 시행령 번호 05/2018/TT-BCT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혹은 시행규칙 번호 38/2015/TT-BTC 의 부록 2 의 아이템 2.69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원산지 세부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C/O 발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1 임시수입-재수출, 임시수출-재수입, 국경지역 운송품, 보세창고로 제품 운송 사업 관련 수출입품 보세구역 적용에 대한 지침에 관한 시행규칙 번호 09/2020/TT-BCT (2020.05.14)

2021 년 1 월 1 일 자정부터 국제 검문소와 동일하게, 주요 국경 검문소(베트남과 이웃국가 사이 개방 되어있는 검문소)에서도 임시수입-재수출품, 국경지역으로의 운송품, 보세창고운송 제품에 대한 통관 허가 권한이 주어집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0 년 6 월 30 일부터 발효됩니다.

=====0o0=====